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8.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2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4.8.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8.27.)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24.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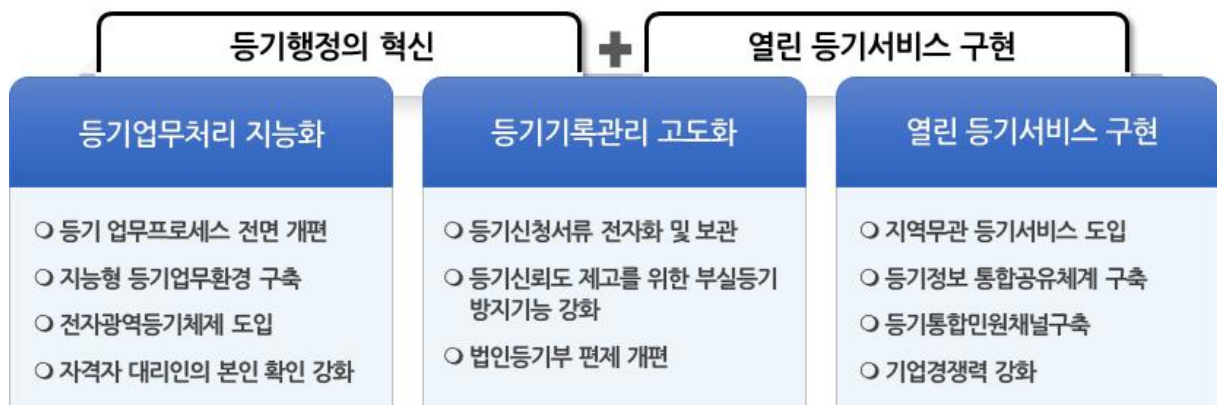
(전문위원 이화실)

1. 입법 경과

대법원은 ① 등기업무처리 지능화를 위한 등기업무시스템 구축, ② 등기기록관리 고도화에 따른 구축, ③ 열린 등기서비스 구축 등 노후화된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국가등기체계 개편의 기반을 마련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2024. 8. 12. 정부가 제출한 「민법」, 「상법」,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은 2025년 1월 31일 개통·운영될 예정인 미래등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주요내용 >



자료 : 법원행정처

5건의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정부안으로 제출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4년 5월 7일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및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고 임기만료폐기 되었음.

당시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사무소 이전 등기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특례 등과 관련한 정부안의 내용을 채택하였고 일부 자구 및 다른 법률 개정사항을 보완하여 의결하였음.

금번 정부가 제출한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임.

2.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민법 안 제50조, 법인등기법 안 제3조)

개정안은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려는 내용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第50條(分事務所設置의 登記) ①法人이 分事務所를 設置한 때에는 主事務所所在地에서는 3週間内に 分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고 그 分事務所所在地에서는 同期間内に 前條第2項의 事項을 登記하고 다른 分事務所所在地에서는 同期間内に 그 分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여야 한다. ②主事務所 또는 分事務所の 所在地를 管轄하는 登記所の 管轄區域内に 分事務所를 設置한 때에는 前項의 期間内に 그 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면 된다.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u>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u>

<법인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법인의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1. 목적 2. 명칭 또는 상호(商號)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8.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① 법인이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를 선임한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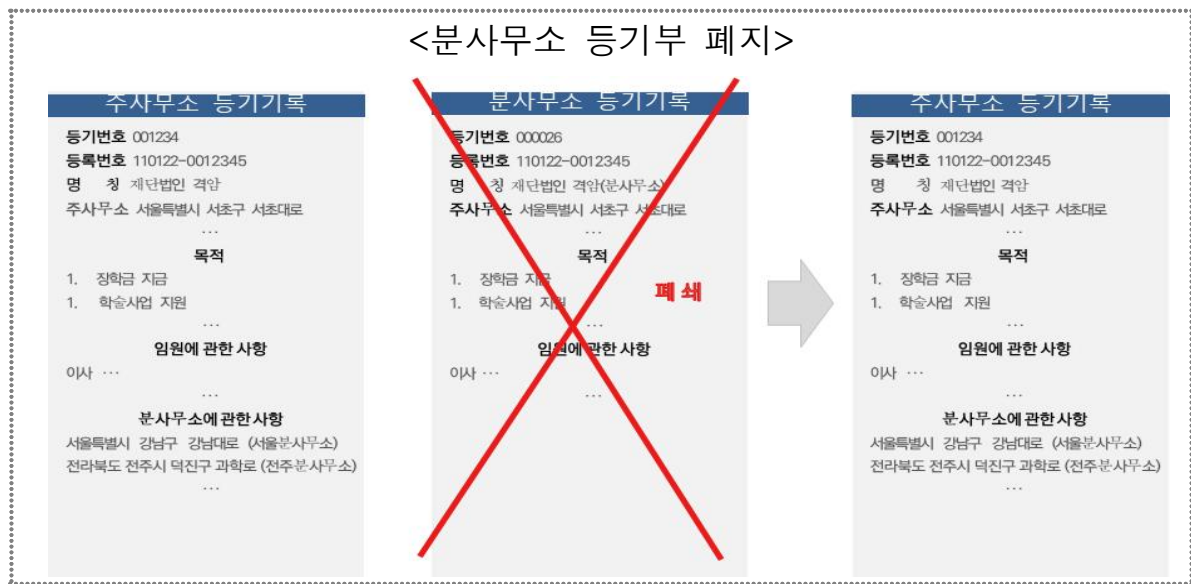
현행 민법 제50조는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와 분사무소소재지에서 3주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분사무소등기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과거 종이 등기부가 운영되던 때에 분사무소등기부를 두지 않으면 등

기부를 열람·발급받기 위해 주사무소소재지까지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이었음. 즉,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도 등기부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2002년 9월, 등기부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관할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발급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등기소 방문없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분사무소 또는 지점 등기부를 유지할 실익은 사라지게 되었음. 오히려 현재는 주사무소 등기부와 분사무소 등기부가 분리 운영되어 법인의 입장에서 이중으로 등기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부담이 되고 때때로 주사무소 등기부와 분사무소 등기부가 불일치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주된 사무소 등기부에만 이루어지도록 등기부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부의 불일치 가능성을 차단하여 등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한편, 현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¹⁾,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²⁾ 등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들은 해당 법률에서 대리인³⁾을 선임하는 경우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및

- 1) 「산림조합법」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법 제107조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또는 사업대표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내용

②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 2)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⑧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이사나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0조(대리인의 등기) ① 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법 제64조의2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 내에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및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두는 주된 사무소나 그 분사무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는)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제2항은 앞서 분사무소 등기부의 폐지를 전제로 대리인 선임 시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법체계상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3조제2항에서 “해당 법령에서 (대리인)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의 문구에서 법문만으로는 “해당 법령”이 어떤 법률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대리인)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로 자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사무소 이전의 등기 등(민법 안 제51조·제52조의2·제85조, 법인등기법 안 제3조의2)

민법 안 제51조제1항 및 법인등기법 안 제3조의2제1항은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에서 각각 이전등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에 따라 민법 안 제51조제2항, 제52조의2, 제85조 및 법인등기법 안 제3조의2제2항은 분사무소 이전등기,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와 해산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도

3) 여기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민법상 임의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아니라, 상법상 지배인과 유사하게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령, 새마을금고법령 등은 관리인이나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분사무소나 지점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은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록 규정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第51條(事務所移轉의 登記) ①法人이 그 事務所를 移轉하는 때에는 舊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移轉登記를 하고 新所在地에서는 同期間內에 第49條第2項에 掲記한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②同一한 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서 事務所를 移轉한 때에는 그 移轉한 것을 登記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 ----- ----- ----- <u>주사무소</u> ----- ----- -.
第85條(解散登記) ①清算人は 破産의 境遇를 除하고는 그 就任後 3週間內에 解散의 事由 및 年月日, 清算人の 姓名 및 住所와 清算人の 代表權을 制限한 때에는 그 制限을 主된 事務所 및 分事務所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②第52條의 規定은 前項의 登記에 準用한다.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법인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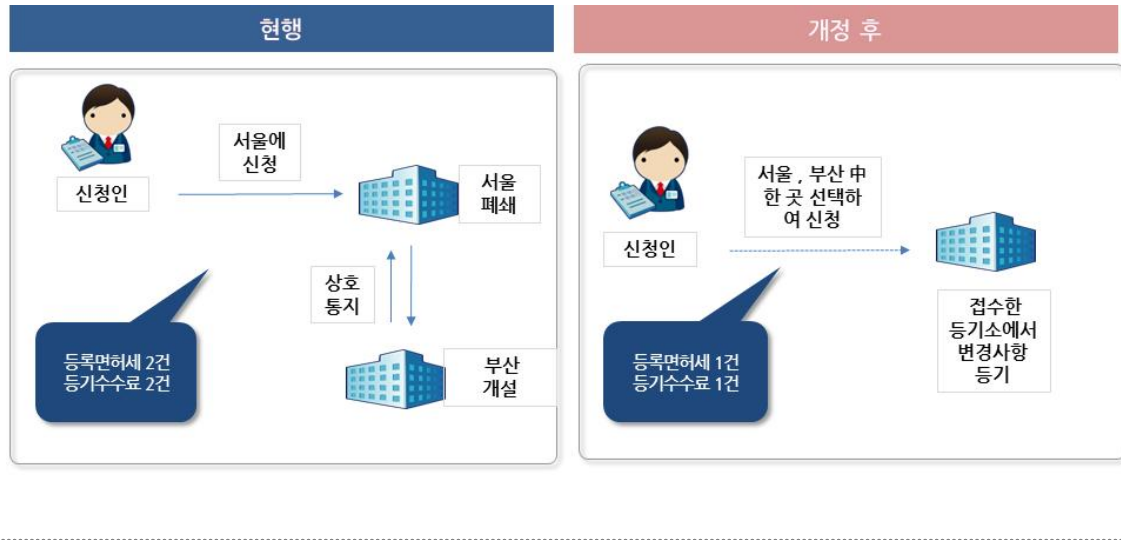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중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 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 기하여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전 소재지에서는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새 소재지에서 등기기록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중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 중전 소재지 등기기록에 변경사항(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만 등기하도록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중전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새로운 등기기록을 개설하도록 하는 기존 방식의 경우 등기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등기절차를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등기신청수수료를 이중으로 부과함으로써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개정안은 등기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주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예시(서울→부산)>



추가로, 개정안은 분사무소 이전등기,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해산등기 등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에 따른 것으로 법 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시범사업 특례 및 경과조치(법인등기법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법인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 폐지 등에 따른 등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3조(분사무소 및 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리인등에 관한 등기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移記)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무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등기관을 갈음하여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법인등기법 개정안은 이 법 시행일을 2025년 1월 31일로 하면서 안 부칙 제2조에서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 폐지 등에 따른 등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안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은 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기록에 일괄로 이기(移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현재 구축 중인 미래등기시스템의 전국 개통일이 2025년 1월 31일이므로 이 법 시행일을 이에 맞추는 한편,

이 법 통과 후 시스템의 개통일 이전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미래등기시스템이 국민의 불편과 혼란 없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개통 이전 개정안과 같이 시범사업의 특례 및 경과조치를 두어 일괄적인 행정처리와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승원위원)

개정안은 2025년 1월 31일 개통·운영될 예정인 미래등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등기신청의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등기사무처리를 위한 내용으로, 법문의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의결

※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1.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8.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등을 선임한 경우로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사항을 등기하도록 조문의 문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해당”을 “다른”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분사무소의 등 기사항) 법인의 분 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에서는 주사무 소(主事務所)나 본 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 외에 는 등기하지 아니 한다.	제3조(분사무소 설치 의 등기 등) ① 법 인이 분사무소(分事 務所)나 지점을 설 치한 경우에는 주 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등기하여야 한 다.	제3조(분사무소 설치 의 등기 등) ① (개 정안과 같음)
1. 목적		
2. 명칭 또는 상호 (商號)	1. 분사무소나 지점 의 소재지와 설 치 연월일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2.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②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	② ----- ----- ----- ----- ----- ----- -----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 유		
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주소		

<u>와 주민등록번호</u>	<u>위를 할 수 있는</u>	-----
<u>7. 여러 명이 공동</u>	<u>자(이하 “대리인등”</u>	-----
<u>으로 법인을 대</u>	<u>이라 한다)를 선임</u>	-----
<u>표할 것을 정한</u>	<u>한 경우로서 해당</u>	----- <u>다른</u>
<u>경우에는 그 규</u>	<u>법령에서 등기의무</u>	-----
<u>정</u>	<u>를 부과한 경우에</u>	-----
<u>8. 법인의 이사의</u>	<u>는 주사무소나 본</u>	-----
<u>대표권을 제한한</u>	<u>점의 소재지에서</u>	-----
<u>경우에는 그 제</u>	<u>그 대리인등에 관</u>	-----
<u>한</u>	<u>한 사항을 등기하</u>	-----
<u>9. 그 밖에 대법원</u>	<u>여야 한다.</u>	-----.
<u>규칙으로 정하는</u>		
<u>사항</u>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등기사항에”를 “등기사항 등에”로 한다.

제1조 중 “등기사항”을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① 법인이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 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를 선임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 폐지 등에 따른 등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3조(분사무소 및 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리인등에 관한 등기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移記)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무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등기관을 갈음하여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4항 중 “본점 및 지점 또는 각 사무소”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항 중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제18조의2제8항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로 한다.

제9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중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3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6조 전단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한다.

⑤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6조 본문 중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을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으로 한다.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로 한다.

제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2주 이내에 그 사무소”를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

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⑦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⑧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6제1항 중 “본점 및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⑨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고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금고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9조 중 “3주간 내에 그 사무소”를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주간 내에 그 사무소”를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제80조의2제7항 중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⑩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 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5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각각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로 한다.

⑪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支事務所)”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중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86조의4제6항 중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⑬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주사무소”로 한

다.

제26조제2항 중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 또는 출장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각 사무소”를 각각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⑮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주사무소 소재지 및 지사무소 소재지”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⑯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주된 사무소에서는 2주 이내에, 분사무소에서는 3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를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

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협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8조의2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로 한다.

제108조의3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인의 <u>등기사항</u> 에 관한 특별법	법인의 <u>등기사항 등에</u>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u>등기사항</u> 에 관한 특별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등기사항 및 등기절차</u> ----- -----.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법인의 <u>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u>	제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1. 목적	① 법인이 <u>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u>
2. 명칭 또는 상호(商號)	1.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②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u>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u> <u>그 규정</u> 8. <u>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u> <u>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u> 9. <u>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u> <u>하는 사항</u> <u><신 설></u>	<u>하 “대리인등”이라 한다)를 선</u> <u>임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u> <u>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u> <u>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u> <u>그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을 등</u> <u>기하여야 한다.</u> <u>제3조의2(사무소의 이전등기) ①</u> <u>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u> <u>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u> <u>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u> <u>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u> <u>다.</u> <u>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u> <u>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u> <u>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u> <u>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u> <u>한다.</u>
---	---